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프라’ 를 ‘기반시설’ 로 용어 변경〉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77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용어 변경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4. 3.

다. 회 부 일: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Ⅲ. 검토의견

1.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용어 변경

가. 개정안 요지

-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 및 제48조의1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 ----- ----- ----- ----- ----- ----- <u>기반시설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

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u>관광인프라</u>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업의 육성) ① ----- ----- ----- ----- ----- --<u>관광기반시설</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및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은 ‘스마트관광산업’과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각각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면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을 이르는 표현으로,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하여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용어로 ‘기반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며,¹⁾ 법제처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통하여 ‘인프라’를 ‘기반’ 또는 ‘기반시설’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77

1) 국립국어원 누리집(개선>표준 전문용어, https://www.korean.go.kr/front/imprv/stdndrdList.do?mn_id=159&pageIndex=1)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78호)

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79호)

법률명	조문 내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 을 확충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